부동산 세법 5	등록면허세, 재산세(1)	교수: 필립 홍 문 성
	(기본서: P.203 ~ 247)	과정: 심화이론(5주차)

★ 오늘 학습의 혼동되는 중요 지문 완벽정리 하기

** 등록면허세

- 1. 등록면허세는 형식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【① 형식주의 조세 ② 사실주의 조세】이다.
- 2. 등기 또는 등록 후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【① 환급하지 아니 ② 환급】한다.
- 3. 경매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이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시유로 등기·등록 당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【① 사실상 취득가액 ② 변경된 가액】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4. 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신청은 【① 부동산가액 ② 채권금액 ③ 전세금액】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【④ 1.000분의 2 ⑤ 1.000분의 3】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.
- 5. 대도시 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【① 5배 ② 3배】로 중과세한다.
- 6.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【① 등록을 하기 전 ② 취득일로부터 60일】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** 재산세

- 7.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【①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② 과세기준일(매년 5월 1일)】에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개인·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조세이다.
- 8.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【① 시·군·구 ② 특·광·도】세이다.
- 9.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【① 공부상 현황 ② 사실상의 현황】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
- 10. 재산세는 【① 토지 ② 건축물 ③ 주택 ④ 선박 ⑤ 항공기】를 과세대상으로 한다.
- 11. '주택'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이 경우 주택은 【①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통합 ②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으로】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.
- 12.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【① 5배 ② 10배】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

- 13 토지, 건축물, 주택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【① 적용비율 ② 용도지역별 배율 ③ 공정시장가액비율】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14. 분리과세대상의 농지에 대하여는 【① 1,000분의 0.7(0.07%) ② 1,000분의 2(0.2%)】의 세율을 적용한다.
- 15. 사치성 재산 중 별장, 골프장,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【① 표준세율 + 8% ② 1,000분의 40(4%)】의 세율을 적용한다.

★ 객관식 문제의 완벽정리

- 16. 「지방세법」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?
- ①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.000분의 8로 한다.
- ② 소유권 외의 전세권등기시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,000분의 2로 한다.
- ③ 임차권설정등기시 표준세율은 월 임대차금액에 보증금을 포함한 가액의 1,000분의 2로 한다.
- ④ 경매신청·가압류·가처분등기시 표준세율은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로 한다.
- ⑤ 가능기 설정등기시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2로 한다.

17. 다음 중 「지방세법」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?

- 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⑤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(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)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©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- ②지상권설정 등기·등록이나 가등기를 할 때는 모두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① 5개

② 1개

③ 2개

(4) 37H

⑤ 4개

18.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기·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하기 전(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)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
-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면허세를 등기·등록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③ 신고 및 납부한 이후 중과세 및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
- ④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%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.
- ⑤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최소 5년(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등록면허세를 포탈한 경우 10년)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.

19. 다음 중 재산세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재산세는 합산과세와 개별과세 방식이 있다.
- ②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이다.
-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·징수한다.
- ④ 재산세는 납부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.
- ⑤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적용된다.

20.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취득 당시의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
- ② 법인은 장부가격, 개인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
- ③ 법인ㆍ개인 구분 없이 모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
- ④ 감정원의 감정가격 적용
- ⑤ 대도시는 기준시가, 기타 지역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

21.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②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④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당해 건축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그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.
-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** 정답

- 1. ① 형식주의 조세
- 2. ① 환급하지 아니
- 3. ② 변경된 가액
- 4. ② 채권금액, ④ 1,000분의 2
- 5. ② 3배
- 6. ① 등록을 하기 전
- 7. ①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
- 8. ① 시·군·구
- 9. ② 사실상의 현황
- 10. ① 토지, ② 건축물, ③ 주택, ④ 선박, ⑤ 항공기
- 11. ①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통합
- 12. ② 10배
- 13. ③ 공정시장가액비율
- 14. ① 1,000분의 0.7(0.07%)
- 15. ② 1,000분의 40(4%)
- 16. ③ 임차권설정등기시 표준세율은 월 임대차금액에 보증금을 제외한 가액의 1.000분의 2로 한다.
- 17. ⑤ 4개 모두 옳다
- 18. ③ 신고 및 납부한 이후 중과세 및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
- 19. ④ 재산세는 납부불이행시 가산금이 부과된다.
- 20. ③ 법인·개인 구분 없이 모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
- 21. ④ 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당해 건축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그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